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27 발의연월일: 2024. 6. 7.

발 의 자:고민정·신장식·천하람

박홍근 • 한병도 • 이정문

김남희 · 서미화 · 윤건영

노종면 · 송옥주 · 김 현

허 영・황정아・박민규

조인철 • 박용갑 • 김한규

김종민 • 한창민 • 김영배

강준현 • 이해민 • 김승원

김원이 • 홍기원 • 박균택

정동영 · 용혜인 · 위성곤

유후덕 • 손명수 • 이워택

임미애 · 복기왕 · 김주영

박희승 • 모경종 • 박지워

전종덕 • 조승래 • 오세희

민형배 · 김남근 · 이해식

전진숙 • 박정현 • 서영석

양부남 • 문진석 • 정진욱

전현희 · 소병훈 · 송재봉

이기헌 · 정혜경 · 이재관

김우영 · 김용만 · 문금주

이연희 • 박수현 • 조계원

이정헌 · 윤종오 · 위성락

황명선 · 문대림 · 강유정 이광희 · 정태호 · 박선원 박해철 · 김태년 · 한정애 정준호 · 이성윤 의원 (7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(이하 "문화방송"이라함)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·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방송문화진홍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,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,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, 방송문화진홍회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,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조, 제6조, 제9조, 제10조 및 제10조의3).

법률 제 호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 다출자자(最多出資者)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, 민주적 이며 공정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이익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"9명"을 "21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,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 한다.
- 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.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(性別)로 각각 1명 이상을 추천(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여야 하고,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- 2.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

사람 6명(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)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3. 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4.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
 - 가.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
 - 나.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
 - 다.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
-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, 공모·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-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이사를 임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0조제10호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에 규정된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.
- ⑥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의2. 제10조의3의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구성과 운영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3(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진흥회가 최 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 (이하 "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,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 - ④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.
 -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

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 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 회가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조(목적) 이 법은 방송문화진 제1조(목적) 이 법은 방송문화진 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 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 회가 최다출자자((最多出資者) 회가 최다출자자(最多出資者)인 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 실현하고,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현하고, 민주적이며 공정한 방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 송문화의 진흥과 공공이익 향 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. 다. 제6조(임원) ① 진흥회에는 임원 제6조(임원) ① -----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의 이사와 감사(監事) 1명을 두 며,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다. 다만,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다. ② · ③ (생 략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,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 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 명한다. 위원회가 임명한다. 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 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

- 명.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(性別)로 각각 1명 이상 을 추천(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하여야 하고,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- 2.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6명(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)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3. 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한다.
- 4.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
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 가.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 나.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 다.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 천 2명

<신 설>

<신 설>

⑤ ⑥ (생략)

(생 략)

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단서 신설>

<신 설>

-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 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하며, 공모 · 의견수렴 등의 과 정을 거쳐야 한다.
-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이사를 임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⑦· ⑧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)
- 제9조(이사회의 구성) ① ~ ③ | 제9조(이사회의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-----. 다만, 제 10조제10호에 따른 방송문화진 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 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에 규정된 사장후보 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

<신 설>

⑤ ⑥ (생략)
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 결하다.

1. ~ 10. (생략) <신 설>

11. (생략) <신 설>

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 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.

⑥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 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 로 진행하여야 한다.

⑦ · ⑧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)

제10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제10조(이사회의 기능) ------

----.

1. ~ 10. (현행과 같음) 10의2. 제10조의3의 사장후보추 천국민위원회 구성과 운영

11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의3(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 회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진흥 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 한 국민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

<u>추천국민위원회"라 한다)를 둔</u> <u>다.</u>

②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

-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,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- ④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 로 추천하여야 한다.
-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 천국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